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3년 3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3 호

군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제4항 제3호 중 “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”을 “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” 로 한다.

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중 “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으며” 를 “제척·회피하여야 하고, 기피될 수 있으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</u>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</u></p>
<p>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과정에서 <u>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으며</u>, 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----- ----- -----<u>제척·회피하여야 하고, 기피될 수 있으며,</u>----- ----- -----</p>

